

전공심화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: 2008.08.01
개정 : 2008.12.17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8.03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05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>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입학전형계획(설치학과 및 모집인원)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3.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4. 전공심화과정 운영, 관리,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교무처장이 대행한다.

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이상을 둔다.
<개정 2018.03.01.>

제8조(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) ①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에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을 위한 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4.11.01.>
② 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의 학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교수 전원과 관련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학과장이 위촉하며,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/2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③ 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개정 2014.11.01.>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수당)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출석한 산업체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 신설 2022.05.01]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